

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부 제출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에 자재 및 물자 비축, 유관기관 지원·협조 체제 구축 등 가뭄 대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(안 제3조 제2항).
-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(안 제32조의2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김 성 완)